

[별표 2]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2005.5.7>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 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법 인	개 인	
토 목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 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 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 인	14억원 이상	
건 축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 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 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 인	10억원 이상	
토 목 건 축 공 사 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 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개 인	24억원 이상	
산 업 · 환 경 설 비 공 사 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 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 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 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 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 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개 인	24억원 이상	

조 경 공 사 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 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 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 면적 33제곱미 터 이상
		개 인	14억원 이상	
실 내 건 축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토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 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미 장 · 방 수 · 조 적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석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도 장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비 계 · 구조물 해 체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금속구 조물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 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창 호 공 사 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 인		
지 붕 판 금 · 건축물 조 립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철 근 · 콘크리 트공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기 계 설 비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상·하수 도설비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보링·그 라우팅 공 사 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철 도 · 궤 도 공 사 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전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 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 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개 인	20억원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삭 도 설 치 공 사 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 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원치
		개 인	6억원 이상	4. 발전기 5. 사무실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준 설 공 사 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 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레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닛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개 인	20억원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양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승강기 설 치 공 사 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1 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2 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스 시 설 시 공 업 제 3 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 방 시 공 업 제 1 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자 중 2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 방 시 공 업 제 2 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 방 시 공 업 제 3 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 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 대 이상 8. 사무실 전용면 적 12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유지 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 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돈 보기·망원경·카 메라·비디오카메 라 및 균열폭측 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 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 치·채인 다. 초음파에 의 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 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 식검사 : 콘크리 트전기저항측정 장치(resistivit y), 전위차측장 치(half cell pot ential) 5. 사무실 전용면

				적 20제곱미터 이상
--	--	--	--	----------------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령·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